
신천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신 천 중 학 교

차 레

제1장 총 칙	1
제2장 학생의 권리	1
제3장 학생생활	5
제1절 교내생활	5
제2절 교외생활	13
제3절 정보통신	13
제4절 생활교육	14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15
제1절 총칙	15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16
제3절 학생의 생활교육	17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20
제5장 학생자치회 운영규정	21
제1절 총칙	21
제2절 조직	22
제3절 대의원회	23
제4절 학생회 운영위원회	24
제5절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관리 업무 시행 규칙	24
제6절 학급자치 회장·부회장 선출 규정	28
제6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29
제7장 장애학생인권 규정	31
제1절 총칙	31
제2절 교육	32
제3절 폭력(성폭력)	3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신천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 ① 본 규정은 신천중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법인' 등 포함)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4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제6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의 안전 관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학생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구조를 받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갖는다.

제7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② 학생은 학교의 자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갖는다.
- ③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도 그에 맞는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도 갖는다.
- ④ 학생이 임신하였거나 또는 미혼모 등의 이유로 학습권을 부당하게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8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학생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제9조【휴식을 취할 권리】

학생은 학교의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로 휴식을 취할 권리도 침해당하지 않는다.

제10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학생은 두발의 길이를 규제받지 않는다.
-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1조【사생활의 자유】

-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갖는다.
- ② 학생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 받지 아니하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 ④ 학생은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당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은 학교로부터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받을 수 있다.
- ⑤ 학생은 학교가 다른 방법으로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하려고 할 때 그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학생은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의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제13조【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 ② 학생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14조【의사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당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학생은 학교로부터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학생 게시판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5조【자치활동의 권리】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 시 학생의 인권을 존중받고, 제·개정된 학칙 등 학교 생활규정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③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의견 제출권을 갖는다.

제17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to 갖는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③ 위 학생들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학생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텔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0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 학생은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제21조【급식에 대한 권리】

- 학생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제22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른 시험기간 중 결석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23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소명의 기회,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 받는다.
- ② 학생의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안 되며, 회복적생활교육을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은 보장된다.

제24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① 빈곤, 장애, 한 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현장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 ③ 다문화가정 학생은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전입학 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제25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① 학생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받을 수 있다.
- ② 학생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제2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로 활동할 권리】

-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② 학생은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27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교사의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28조【자학자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책을 읽는다.

제29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③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해서는 안 된다.

제3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또는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31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2조【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교내외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 (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고충 신고 상담 전화 1588-7179
 - (2) 대검찰청 학교폭력 신고 전화 1588-2828
 -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 (4) 경찰청 범죄 신고 112
 - (5)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도우미 1388
 - (6)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 (7) 교육청이나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8)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제33조【양성평등】

- ①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④ 남녀 학생 단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4조【양성평등에 준한 여가활동】

-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운동장, 도서관, 복지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시 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교사는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 ④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35조【소지금지물품 및 검사 절차】

- ① 학생은 다음 물품(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성냥, 라이터 폭죽, 도박 관련 물건, 음란물,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등 향·정신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 ②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③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⑤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⑦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 ⑧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 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용의사항】

- ① 본교 학생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정한 생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용의 및 복장을 한다.
- ② 본교 교복의 디자인 및 소재는 다음과 같다.

◆ 신천중 교복 디자인 및 소재(동복) ◆

성별	분류	형태(디자인)	소재 및 특징
남 학 생	재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원단 * 곤색 개버딘 스판 ②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일러드 카라 싱글 3버튼 * 학교 고유 체크 바색 (넥타이체크와 동일) ③ 가슴 왼쪽 학교 와펜 부착 ④ 명찰은 호주마니형 사용 ⑤ 진회색 단추 / 소매 단추 없음 (21mm/1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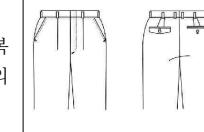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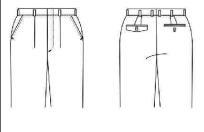
조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원단 * 몸관 곤색 ②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넥, 밑단 시보리 (회색, 곤색, 흰색) * 앞 양쪽 세로 줄무늬 2줄 / 뒤편 줄무늬 없음 ③ 가슴 왼쪽 학교 와펜 부착
셔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원단 * 백색 스판 ②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쪽 가슴 아웃주머니 * 단추 11mm 흰색 * Y카라
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원단 * 곤색 개버딘 스판 ②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TUCK * 바지부리 7" 이상

◆ 신천중 교복 디자인 및 소재(동복) ◆

성별	분류	형태(디자인)	소재 및 특징
여 학 생	재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원단 * 곤색 개버딘 스판 ②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일리드 카라 싱글 3버튼 * 학교 고유 체크 바색 (넥타이체크와 동일) * 왼쪽 가슴 위 포켓치프 자주색 ③ 가슴 왼쪽 학교 와펜 부착 ④ 명찰은 호주마니형 사용 ⑤ 진회색 단추 / 소매 단추 없음 (18mm/15mm)
	조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원단 * 몸판 곤색 ②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넥, 밑단 시보리 (화색, 곤색, 흰색) * 앞 양쪽 세로 줄무늬 2줄 / 뒤판 줄무늬 없음 ③ 가슴 왼쪽 학교 와펜 부착
	셔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원단 * 백색 스판 ②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추 11mm 흰색 * Y카라
	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원단 * 개버딘 체크 (넥타이체크와 동일) ②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반 양쪽 외주름 2개 / 뒷반 주름 없음



◆ 신천중 교복 디자인 및 소재(하복) ◆

성별	분류	형태(디자인)		소재 및 특징
남 여 학 생 공 용	생활 복상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원단 * 곤색 기능성 원단 * 흰용률 폴리에스터 100% 기능성 ②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버튼 T셔츠 * 카라 끝, 소매, 주머니 와펜 위 화색 배색 * 검정/흰색 단추 11mm * 옆트임 * 가슴 왼쪽 학교 와펜 부착
남 여 학 생 공 용	교복 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원단 * 화색 개버딘 원단 ②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 여밈 단추 처리
남 여 학 생 공 용	생활 복 반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원단 * 화색 개버딘 원단 ②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밑단 카브라 * 밑단 양쪽 비조부착(단추부착) * 앞 여밈 단추 처리

여학생 하의 (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원단 * 회색 개버딘 스판 ②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판 양쪽 외주름 2개 / 뒷판 주름 없음
----------------	--	--	---

◆ 신천중 체육복 디자인 및 소재(동복) ◆

성별	분류	형태(디자인)	소재 및 특징
남 여 공 용	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퍼 티셔츠 ② 상의 길이 : 둔부를 덮음 ③ 상의 품 : 여유 있게 ④ 전체 바탕은 청색이고 양팔과 소매는 흰색 줄무늬 ⑤ 피부 접촉면이 부드러우면서 신축성 있는 소재 ⑥ 정전기 및 보풀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
	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긴바지 ② 허리 밴드 ③ 진한 청색 바탕에 흰색 염줄 ④ 피부 접触면이 부드러우면서 신축성 있는 소재 ⑤ 정전기 및 보풀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 ⑥ 섬유혼용률 : 상·하 폴리에스터 100% (기준)
			동복 체육복 바지와 상의의 색상은 학년별로 다름 자주색-청색-회색. 3년 주기로 반복

◆ 신천중 체육복 디자인 및 소재(하복) ◆

성별	분류	형태(디자인)	소재 및 특징
남 여 공 용	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 (기준)
	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 (기준)

제37조【생활 협약】

- ① 본교 학생은 공동체의 질서 유지 및 자신의 권리 보호, 학생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해 생활 협약을 정하여 실천한다.
- ② 생활 협약은 본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정 제3장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생활 협약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협의하여 정하며, 각 구성원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생활 협약을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한다.

제38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은 담임 교사 또는 담당교사와 협의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교사가 임장 지도를 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단체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9조【조퇴 등】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과, 외출 및 조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0조【수업】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출결】

출결 사항은 학업 성적관리 규정에 의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제2절 교외생활

제42조【학생교외생활】

학생의 교외 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웃어른을 만나거나 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행동한다.
- ⑤ 교통 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 안전에 유의한다.
- ⑥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 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43조【학생의 보호자 역할】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여 협력적으로 지도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44조【학생의 사이버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⑧ 컴퓨터는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스스로 절제하여 중독을 예방한다.

제45조【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관리】

- ①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업시간에 사용은 불허하고, 담임에게 자진하여 맡기고 하교할 때 되찾는다.
- ②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 ③ 수업 중 휴대전화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④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 1.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 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3.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7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10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

제4절 생활교육

제48조【안전교육】

-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 ③ 학기당 1회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학생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한다.
 - ⑥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9조【진로교육】

- 진로 교육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한다.
 - ②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한다.
 - ③ 진학 교육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④ 개별상담은 수시로, 집단상담(심성훈련)은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50조【교외 생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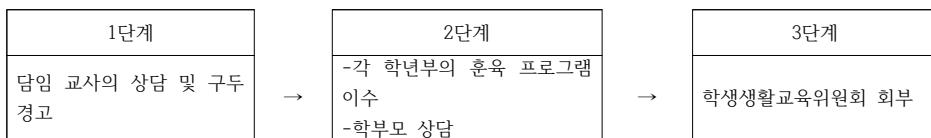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학생생활 교육을 실시한다.

제51조【훈육·훈계】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훈육·훈계의 방법을 사용한다.

- ①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및 교사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체벌은 금지한다.
- ② 회복적 생활 교육을 활용한다.
- ③ 훈육·훈계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도한다.
- ④ 각 학년부와 생활인권담당 부서의 훈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인권을 고려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안내 하는 지도 방법에 따른다.

◎ 학생 생활 지도단계



제52조【보호자의 책임】

- ① 학생을 선도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진행하도록 한다.
- ②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1절 총칙

제53조【명칭】

이 규정은 '신천중학교 학생생활교육규정'이라 한다.

제54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56조【학생생활교육 원칙】

학생생활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먼저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증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 하여 보면 탄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생활교육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생활교육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생활교육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7조【설치】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8조【기능】

- 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②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 ④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계몽 및 실제 지도
 - ⑤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59조【구성 및 직무】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학년별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1) 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 원: 학생체육안전부장, 학년부장, 해당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간사 겸임)
 - (4) 간 사: 회의록 작성 및 기록
- (5)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0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1조【운영】

- ①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⑥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신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 ⑨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 ⑩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조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제62조【회의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63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간사】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해당 사안의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 1명으로 한다.
- ② 간사는 학년별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으로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6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생활교육

제66조【학생생활교육의 종류】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생활교육을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생활교육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교육을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67조【학생생활교육의 방법】

학생 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② 사회봉사
 -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
 -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 상담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③ 특별교육 이수

-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②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4) 상담 자원봉사자, 지역별 한국 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돋пуска.
- (4)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 (5)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6)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진로상담 담당부장(상담교사)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돋пуска.

제68조【학생생활교육의 기준】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학생생활교육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교내외에서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을 한 학생	○	○	○	○
2	학교 문서를 훔치거나 변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
3	학교의 공공기물이나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	○	○	○
4	경찰에 연행되어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5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6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 또는 시간에 출입한 학생	○	○	○	○
7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협조 또는 방조한 학생	○	○	○	○
8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9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0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활동(수업, 행사 등)을 거부한 학생	○	○	○	○
11	교내외에서 흡연(유사담배 포함) 또는 음주 사실이 확인된 학생	○	○	○	○
1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학생	○	○	○	○
13	불건전한 모임을 주도하거나 모임에 참석한 학생	○	○	○	○
14	흡연 또는 음주 관련 물건을 소지하거나 제공한 학생	○	○	○	○
15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협조, 방조한 학생	○	○	○	○
16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친 학생	○	○	○	○
17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8	불건전(불법)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학생	○	○	○	○
19	용의복장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학생	○	○	○	○
20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수업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학생	○	○	○	○
2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	○	○	○
22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23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생활교육 처분에 불응한 학생	○	○	○	○
24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
25	본 생활교육위원회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위 또는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생활교육처분을 내릴 수 있다.	○	○	○	○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69조【사안조사】

- ① 조사되는 사안이 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음을 학생에게 고지하고, 사안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 ②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는 금지된다.
- ③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학생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 ④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 ⑤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나, 수업 시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와 수업 시간 조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고, 수업 시간 조사 실시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 및 보충수업 실시가 이루어질 경우 예외적으로 수업 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자기변론서 작성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⑦ 자기변론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보호자에 의한 작성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작성도 가능하고 이 때 대상 학생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⑧ 학생 및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1)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이유
- (2) 사안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3)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음
- (4)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됨
- (5) 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생활 인권담당부장, 해당 학년 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 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6) 학생을 생활교육 처분할 때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7)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70조【심의 절차】

학생 생활교육 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개회
- ② 심의과정 설명, 사안설명
- ③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④ 학생, 보호자 등 퇴장
- ⑤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⑥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 ⑦ 질의·응답: 담당 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⑧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 ⑨ 학생생활교육처분 내용 통보: 생활교육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 ⑩ 위원은 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학생생활교육 내용의 통보】

- ①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생활교육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교사에게 학생의 징계사실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안내하여 누설에 유의해야 한다.

제72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재심의 신청 및 절차】

- ① 징계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 ③ 학교장은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 ⑤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 ⑥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 (1)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2)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제74조【생활교육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생활교육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절 조 직

제75조【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생활교육 대장 및 학생 생활교육 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 또는 K-에듀파인에 문서로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 대장 및 학생 생활교육 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자치회 운영규정

제1절 총 칙

제76조【목적】

이 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7조【명칭】

이 회는 신천중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78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79조【자문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자문위원을 둔다.

제80조【기능】

- ① 이 회는 제50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 활동
 5.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 ②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 지도 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③ 1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자문위원회는 학교 운영 지원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한다.

제81조【임원】

-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3학년)
 - ② 부회장: 1인(2학년)
 - ③ 서기: 1인
 - ④ 각 부의 부장 1인(3학년), 차장 1인(2학년)

제82조【부서】

이 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단, 당해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시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

- ① 기획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전반적 사항, 각 부서 활동 조정 및 지원, 위원 활동 전반에 걸친 종합적 평가
- ② 학습부: 각종 교내 학예 행사 주관, 자기 주도 학습, 학급신문작성주관, 학교신문 기사 모집, 학생 독서, 학교 축제에 관한 사항
- ③ 문화예술부: 교내 환경 관리, 학교 주변 정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체육대회 등 체육 관련 활동 지원 활동
- ④ 봉사부: 봉사활동 기관, 장소, 인원 등 각종 정보의 제공과 홍보, 쓰레기 분리수거, 각종 행사 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
- ⑤ 소통부: 학급회의나 학급자치활동 지원, 학생전용계시판 관리, 학생 의견 취합 및 자치회 협의사항 안내
- ⑥ 학생인권부: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과 학생복지 향상에 관한 일, 학생 생활지도부 운영에 관한 사항
- ⑦ 홍보부: 학생회 활동에 관한 홍보, 학생회 캠페인 활동 지원

제83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 이를 통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하며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제84조【임원 선출】

- ①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선출하는데 입후보자는 개인별로 출마를 원칙으로 하며 2학년 후보와 1학년 후보도 따로 출마하도록 한다. 선거는 직접선거로 하며 후보자 중 총 유효표 득표 순위로 하여 최다 득표자를 회장 및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신천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수여 한다.
- ② 학생회 회장은 남·여 구분 없이 출마하여 경선한다.
- ③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대의원회 및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투표 당선으로 할 수 있다.
- ④ 각 부장, 차장, 서기는 회망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공개 선별하며 대의원회의 협의로 선출

한다.

⑤ 선출 시기는 11~12월에 직접선거로 실시한다.

제85조【임원 자격】

①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선거 해당 학년에서 전입한 학생은 출마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을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자
3. 품행이 바르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4.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5. 애교심이 강하고 협동·봉사·배려 정신이 투철한 자

제86조【임기】

이 회의 임기는 당해 학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잔임 기간이 1학기 이상인 경우에만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3절 대의원회(학급 차치 회장, 부회장)

제87조【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학급의 학급 차치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88조【기능】

대의원회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계획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② 운영 위원회에서 제기된 안건의 토의
- ③ 기타 학생 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토의

제89조【회의】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3. 학생 지도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1주일 전에 공고한다.

제90조【대의원 선출】

① 학급 차치 회장, 부회장은 직접 선거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여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수여 한다.

제91조【대의원 자격】

①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을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자.
2. 품행이 바르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3.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4. 애교심이 강하고 협동·봉사·배려 정신이 투철한 자

제4절 학생회 운영위원회

제9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93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대의원회에 제기할 안건에 관한 사항
- ③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 사항
- ④ 기타 운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94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학생 자문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절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관리 업무 시행 규칙

제95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회 회칙을 준거로 하여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6조【선거권】

선거일 당시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학생회 정·부회장 및 학급회 정·부회장의 선출에 선거권을 갖는다.

제97조【입후보 자격】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선거에 해당하는 학년에서 전입한 학생은 출마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을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자
- ③ 품행이 바르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 ④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 ⑤ 애교심이 강하고 협동·봉사·배려 정신이 투철한 자

제98조【입후보 등록】

정·부회장에 출마하려면 다음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일 공고 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별도 양식)
- ② 선거권자의 20명 이상 30명 이내 추천자 연명부(별도 양식)
- ③ 담임교사의 추천서 1부(별도 양식)

제99조【등록의 취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무기획부장, 학생생활 인권담당 부장, 학생회 지도 교사로 구성된 기본생활 심사위원회에서는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취소한다.

제100조【후보의 사퇴】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동 소견 발표 전에 사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정·부회장 선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선거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후보자의 지지 활동을 할 수 없다. 선거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은 학생회 정·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02조【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기한】

선거 관리위원회는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매년 10월 중에 대의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하고 선거는 11~12월 중에 직접선거로 이루어지며 정·부회장 선거 업무가 종료되면 해체한다.

제103조【선거 일정】

선거 관리위원회에서는 정·부회장 선거일 15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하고 선거일이 공고된 이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 작성 정·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 입후보자 벽보 배열 순서를 정한다.

◎ 선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거 공고	매년 11월 지정일
후보자 등록	매년 11월 지정 당일 16시까지
후보자 심의	매년 11월 지정 당일 16시
학생 추천	매년 11월 지정 당일 16시 30분까지
선거유세	매년 11월 유세 시작 지정일 ~ 유세 종료 지정일 까지
정견발표	매년 11월 지정일 학급회의(행사활동, 자치활동)
투표 및 개표	매년 11월 선거일 1교시부터 투표후 4시 개표
당선자 공고	선거 다음 날

* 단,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전·후일로 선거 진행 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제104조【공고】

입후보자의 순서가 확정되면 교내 방송과 벽보를 통해 공고한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성명, 사진, 공약을 게재할 수 있고 벽보 크기는 개인별 4절지로 하고 매수는 6매 이내로 한다.

제105조【선거 운동】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의 공고가 끝난 뒤부터 투표 날 전 오후 16시까지로 하고, 합동 소견 발표회 1회, 학급 방문 1회, 개별 홍보(점심시간)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선물,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개인 홍보물은 선거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제106조【소견 발표회】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회는 선거 관리위원회 주관하에 투표 당일 실시하고 추첨에 의하여 발표 순서를 결정하며 개인별 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입후보자당 1명씩 찬조 연설을 할 수 되되, 시간은 5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07조【투표 용지】

투표용지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날인이 되어야 하며 정·부회장별로 각각으로 한다.

제108조【투표소】

투표소는 당해 선관위가 지정한 곳에 설치한다.

제109조【투표의 생략】

정·부회장 입후보자가 각 1명일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여 합동 소견 발표회 투표 과정을 생략한다.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학년도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10조【투표 과정】

투표의 과정은 선거인 명부 대조, 투표자 날인, 기표 순으로 한다.

제111조【참관인】

투표소에는 입후보자별 참관인이 배석할 수 있다.

제112조【개표소】

개표소에는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입후보자별 참관인을 배석시킨 자리에서 실시한다.

제113조【개표 방법】

개표에는 유효표, 무효표, 기권표로 구별하고 입후보자 투표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규의 투표용지
가 아닌 것, 날인이 되지 않은 것, 기명의 이름에 잘못 날인된 것은 무효표로 한다.

제114조【당선의 결정】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선출하는데 입후보자는 개인별로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 선거는 직접선거로
유효표 득표 순위로 하여 최다 득표자 각각 1명을 선정한다.

제115조【당선 공고】

정·부회장 당선이 확정되면 학교장의 재가 후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116조【사퇴 및 결위】

정·부회장의 사퇴는 원칙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의 결위가 생길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하고 부회장은 임기 전에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제11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절 학급자치 회장·부회장 선출 규정

제118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회 회칙을 준거로 하여 학급자치 회장·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9조【정수】

학급별로 학급자치 회장 1명, 부회장 1명으로 한다.

제120조【후보 자격】

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학생회 정·부회장 자격 요건에 의한다.

제121조【선거 및 임명 절차】

- ① 학급 회의 회장·부회장의 선출은 학급 자치적으로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한다.
- ② 학급회의 선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3인으로 학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선출된 학급자치 회장·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122조【선거 시기】

학기 초 시작 및 시작 후 20일 이내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한다.

제123조【임기】

임기는 해당 학년 한 학기로 하며, 중임도 가능하다.

제124조【보궐선거】

학급 자치 회장·부회장의 자격상실 또는 사퇴로 인하여 결원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여
선출 한다.

제125조【학급 자치 회장의 지위와 임무】

- ① 학급을 대표하고, 학급회를 총괄하며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 ② 선생님과 함께 학급 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학급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
- ③ 선생님을 도와 학급 환경 및 생활 개선을 위해 힘쓴다.
- ④ 학급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전한 학급 풍토를 확립한다.
- ⑤ 학급 및 학교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제126조【학급 자치 부회장의 지위와 임무】

- ①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② 학급을 대표하고, 학급회를 총괄하며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 ③ 선생님을 도와 회장과 함께 학급 환경 및 생활 개선을 위해 힘쓴다.
- ④ 학급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전한 학급 풍토를 확립한다.
- ⑤ 학급 및 학교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제127조【기타 임원의 임명】

학생들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제128조【기구 및 임무】

학급에는 학급 자체 위원회를 구성한다. 학급 자체 위원회는 학년 초에 구성하되, 2학기 학급 임원 선출 결과를 반영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 학급 자체 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학급 학생들에게 추천받은 6인으로 구성하고, 학급의 주요 행사 및 학급의 각종 사안에 대해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 심의하여 학급에 알리도록 한다.

제129조【학급회 지도】

각 학급의 학급회는 학급 담임이 지도교사가 된다.

제130조【학년 자치위원회 운영】

각 학년에서는 학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년 자치위원회는 각반의 학급자치회장들로 구성하고 학년의 주요 행사 및 학년의 각종 사안에 대해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학년에 알리도록 한다.

제131조【학년 자치위원회 지도】

각 학년의 학년 자치위원회는 학년 부장 및 각 학년 자치 담당교사가 지도교사가 된다.

제6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3조【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3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 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 절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3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 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6조【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7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 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8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39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14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4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 7장 장애학생 인권규정

제1절 총칙

제142조【목적】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143조 【차별행위】

①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돋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성폭력 포함)을 가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제144조 【차별판단】

-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2절 교육

제145조 【교육】

-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실무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폭력(성폭력)

제146조 【괴롭힘 등의 금지】

-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삭제)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신천중학교 학생생활인원규정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신천중학교 학생생활인원규정 200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신천중학교 학생생활인원규정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신천중학교 학생생활인원규정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신천중학교 학생생활인원규정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신천중학교 학생생활인원규정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신천중학교 학생생활인원규정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신천중학교 학생생활인원규정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신천중학교 학생생활인원규정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신천중학교 학생생활인원규정 202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신천중학교 학생생활인원규정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